

지방소멸 대응형 민관공 협력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 본 협 약 서

함양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“LH”), 함양군상공협의회는 “지방소멸 대응형 민관공 협력 시범사업”(이하 “시범사업”)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개요) 시범사업의 개요는 아래로 하고,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확정한다.

구분	워커인(Worker In) 함양프로젝트	청년과 함께 백두대간 따라 가든엔카페
내용	• 임대주택 약50호 건설 • 입주민 고용 지원	• 임대주택 약20호 건설 • 입주민 농·창업 지원
사업비	70억원	49억4천8백만원

제3조(주체별 역할) 협약기관은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, 기관별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.

1. 함양군

- 가.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한 행정지원
- 나.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협조 및 입주민 고용 등 지원
- 다.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처별 공모사업 연계 노력

2. LH

- 가. 임대주택 건설·소유·운영에 대한 제반사항 일체
- 나. 시범사업 고도화·확산 방안 등 검토
- 다.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
- 라.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공모사업 연계를 위한 지원

3. 함양군상공협의회

- 가. 입주민 맞춤형 일자리 마련 노력
- 나. 임대주택 입주민 우선 고용 협력

제4조(사업비 부담)

- 임대주택 건설, 입주민 고용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함양군이 부담하고, 임대주택 시설 보수 및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은 LH가 부담한다.
-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함양군과 LH는 상호 협의하에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비 납부 및 정산)

- 본 협약체결 시 함양군은 시범사업 관련 사업비를 LH에 지급하고, LH는 전용 계좌에 관리한다.
- LH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시 사업비 정산내역을 함양군에 즉시 통지하고, 전용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잔액을 함양군에 반납하여야 한다.

제6조(총괄계획가 위촉) 협약기관은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를 총괄 계획가(MP)로 위촉하여 연구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비밀유지) 협약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협약당사자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협의조정)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수정·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.

제9조(효력) 본 협약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, 시범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시 상호 협의하여 해제·해지할 수 있다.

본 협약서는 3부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들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5월 15일



군수
진병영

Eunbyung Jin



경남지역본부장
정성시

Jeong Sungsi

함양군상공협의회

회장
황순일

Hwang Sunil